

2023년 8월 1일

Preview

최근 투자계약시 투자자에게 부여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투자계약시 각종 경영사항에 대해서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는 것은 오랜 투자 관행으로, 원심은 투자자에 대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전동의권 등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투자계약 조항을 구성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판시하였는데요.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해석을 통해 투자계약 조항에 반영되어야 할 점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걸 이슈 Legal Issues

‘투자계약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및 손해배상약정 등의 유효성과 한계에 대한 대법원 최신 판례 분석’

민후 소식 Minwho News

‘AI서비스(ChatGPT) 활용 업무 방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 검토 법률자문’

‘폭행 및 모욕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서 수사 결과에 항고하여 재기수사 결정 이끌어’

리걸이슈

투자계약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및 손해배상약정 등의 유효성과 한계에 대한 대법원 최신 판례 분석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 사실관계

투자자인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식 20만주(이하 ‘대상주식’)를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이하 ‘본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본건 신주인수계약에서는 1)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당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유상증자나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원고에게 ① 사전통지할 의무 및 ②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였고, 이에 더하여, 2)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③ 대상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고 ④ 위약벌을 부담하는 약정을 포함하였다.



최주선 파트너 변호사
T. 02-538-3424
E. choijs@minwho.kr

◆ 원심의 판단

이 사건의 2심인 원심 판결에서는 위 내용 중 ① 사전통지 의무는 유효한 것으로 보았지만, ② 사전동의 의무는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인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권’이라는 권한을 부여하여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③ 조기상환청구권과 ④ 위약벌 역시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투자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역시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달리 판단하였다.

1. 주주평등의 원칙과 예외

대법원은,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지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상법 등의 강행법규와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로서의 본질적인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그 권한 부여로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에 대한 판단기준을 실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투자계약과 관련한 ② 사전동의 의무, ③ 조기상환청구권 및 ④ 위약벌 규정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의 재무상황, 투자금 유치 내지 신주발행의 긴급성 내지 필요성,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하여 다른 주주들 상호간 이해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심리한 뒤 각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2. ② 사전동의 의무의 유효성 판단기준 및 투자자 권리의 제한

대법원은 ② 사전동의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지만,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그와 같은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② 사전동의 의무는 주주에 대한 차등적 대우는 맞지만, 그러한 ② 사전동의 의무 부여가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고 그러한 동의권 부여로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며 오히려 회사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된다면 그러한 ② 사전동의 의무 부여 약정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경우에는, 본건 신주인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납입한 신주인수대금은 피고 회사의 유동성 확보와 자본증가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등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여지가 많고,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취득한 소수주주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경영사항에 대한 감시·감독 등 목적에서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실질적인 손해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측면에서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원고에 대한 차등적 취급에 반대할 만한 동기가 존재한다거나 원고와의 관계에서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일부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감시·감독 등을 위하여 권한이나 지위를 부여받는 정도만으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불합리한 자의적 차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원고의 사전동의권 등 약정의 대상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내지 유상증자 여부 등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와 같은 일부 주주가 사전동의권 등을 갖더라도 다른 주주의 의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건 신주인수계약 상의 ② 사전동의 의무는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며, 위 구체적인 판시를 보면 투자자인 원고가 소수주주여서 ② 사전동의 의무가 전횡보다는 건전한 감시·감독을 유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모든 투자계약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개별 사안마다 위 기준에 맞추어 달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통상적인 투자계약은 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바, 위 판시는 통상적인 투자계약에서의 ② 사전동의 의무 약정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위와 같이 ② 사전동의 의무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하면서도,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언급하였는바, “그와 같은 우월적 권한 또는 지위를 부여받은 소수주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지배주주의 경영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등 그 권한행사로 인하여 당해 회사 또는 전체 주주들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따라 그 권한행사를 통제할 수도 있는 점”을 언급한 부분이 그것이다.

이는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그 행사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이 투자계약상의 ② 사전동의 의무 약정이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에 따른 것인데, 만일 투자자가 이를 빌미로 전횡을 한다면 위와 같은 예외적 인정의 근거가 사라진다.

따라서 대법원이 위와 같은 통제 방안 언급은 ② 사전동의 의무의 예외적인 유효성 인정 이유와 일관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③ 조기상환청구권 및 ④ 위약벌 규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및 투자자 권리의 제한

대법원은 ③ 조기상환청구권 및 ④ 위약벌 규정에 대해서는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고 ② 사전동의 의무 위반 시의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포괄하여 판단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대법원은,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② 사전동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③ 조기상환청구권 및 ④ 위약벌 규정 등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처음부터 보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② 사전동의 의무 위반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일 뿐이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약정 금액이 투자원금 상당액과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애초부터 투하자본 회수를 목적으로 투자원금 반환을 약정한 사안’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법원은 ② 사전동의 의무의 유효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에서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고 그 약정이 ② 사전동의 의무 위반으로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일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② 사전동의 의무의 유효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③ 조기상환청구권 및 ④ 위약벌 규정의 유효성도 함께 인정될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도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종류별로 함께 언급해 두었다.

먼저 대법원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평가될 청구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의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동의권 부여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을 체결한 동기와 경위, 회사의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그 주주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회사가 동의권 부여 약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서, 그와 같은 약정이 사실상 투자자본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여, 투자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예정 규정 적용 시 법원은 그러한 약정이 사실상 투자자본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민법상의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하였다는 차원에서만 볼 것은 아니고,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투자자본 회수를 보장하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경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이 정한 약정 위반의 효력에 따른 원고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등 상환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계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구조의 위약별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라고 판시하여, ③ **조기상환청구권** 및 ④ **위약별 규정 역시 상법상의 상환요건이나 공서양속 등 기존 법률 규정과 법리에 따른 제한을 넘어서 수 없음**을 판시하였다.

4. 결론

대법원의 이번 판시는 관행적으로 규정되어지던 투자계약상의 각종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그 유효성 판단 기준 및 권리의 통제 내지 제한에 대하여 세밀하게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참조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다. 특히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무효로 판단했던 조항들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와 한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시하여 이번 판결이 절대적인 유무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그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개별 사안의 경우에는 유무효 판단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고,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규정하더라도 그 금액이 상당 부분 감액 내지 무효화될 수 있는바, 향후 투자계약 실무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하여 다른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공정성이 담보되는 내용으로 계약조항을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후 소식

AI서비스(ChatGPT) 활용 업무 방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AI(ChatGPT)를 활용한 업무 방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ChatGPT를 활용할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A사는 수집된 정보 등을 ChatGPT에 입력하고, AI가 산출한 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고객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ChatGPT에 입력하는 행위가 ChatGPT의 운영사인 openAI에 개인정보취급을 위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정보 입력 과정에서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공하지 않은 채 제공한 경우, 제공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예정한 업무 절차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준에 빗대어 A사와 openAI사의 법적 지위를 파악하였고, 그에 따른 법적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수집 및 입력을 통해 openAI에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대상 정보들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고, 정보 제공에 따른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 방안을 마련,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후는 A사가 chatGPT에 입력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의 기준과 법원 판례를 근거로 검토하였고, A사에 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는 위 법률자문 절차를 통해 chatGPT 등 AI서비스를 이용한 업무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진단,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민후 소식

폭행 및 모욕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서 수사 결과에 항고, 재기수사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폭행, 모욕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수사 결과에 항고하여 재기수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의뢰인)는 미성년자로, 성인인 피의자들로부터 폭행 및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폭력을 가함은 물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들을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들에 대한 불송치결정에 항고하며, 피의자들이 피해자에 가한 폭력행위가 객관성 타당성을 잃은 과도하고 강압적인 지도행위라는 점과 사건 당시 피의자들의 과격한 언행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민후는 피의자들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 및 모욕죄가 성립할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가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 피의자들에 대한 불송치결정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